SUJAIN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 09. 06.(금)]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택지유형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비규제지역	민간택지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단,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접수 제한)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 09. 06.(금)	2024. 09. 19.(목)	2024. 09. 20.(금)	2024. 09. 23.(월)	2024. 09. 27.(금)	2024. 09. 29.(일) ~ 2024. 10. 05.(토)	2024. 10. 08.(화) ~ 2024. 10. 12.(토)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7.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 ·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등"이란, 세대별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합니다.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 · 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sujain-hangang.co.kr)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되며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 1순위, 2순위)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 09. 06.(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해당지역	기타지역				
일 정	2024. 09. 19.(목)	2024. 09. 20.(금)		2024. 09. 23.(월)	2024. 09. 27.(금)	2024. 09. 29.(일) ~ 2024. 10. 05.(토)	2024. 10. 08.(화) ~ 2024. 10. 12.(토)
방 법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 · 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 (PC · 모바일) 청약홈	•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39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 · 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국방부(국군복지단)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 · 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김포시 내 6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5조에 따라 동일한 계약당사자가 하나의 문서의 내용을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로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계약서로,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발코니확장 계약서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 기재금액의 총 합계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이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양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분실 등으로 이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분양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재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III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김포시 도시관리과 – 7760호(2024. 09. 0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1~4층, 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3,058세대[조합 766세대, 임대 154세대, 보류지 22세대 포함] 중 일반분양 2,116세대**
  [특별공급 999세대(기관추천 196세대, 다자녀가구 211세대, 신혼부부 353세대, 노부모부양 63세대, 생애최초 17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457	01	50.3901	50	50.3901	23.3994	73.7895	51.1312	124.9207	19.7493	65	7	7	11	2	6	33	32	2
	02	59.8425A	59A1	59.8425	24.6259	84.4684	49.3626	133.8310	26.2187	172	17	17	31	5	16	86	86	13
			59A2	59.8425	27.5317	87.3742	84.6255	171.9997	62.6374									
			59A3	59.8425	25.5569	85.3994	60.7227	146.1221	22.8566									
	03	59.5096B	59B1	59.5096	23.2571	82.7667	49.0880	131.8547	25.6905	478	48	48	86	14	43	239	239	25
			59B2	59.5096	28.7153	88.2249	84.1547	172.3796	63.2473									
			59B3	59.5096	24.3951	83.9047	60.3850	144.2897	22.4565									
	04	59.9777C	59C1	59.9777	26.5540	86.5317	49.4741	136.0058	26.8591	141	14	14	25	4	13	70	71	5
			59C2	59.9777	25.8027	85.7804	60.8599	146.6403	22.9585									
	05	59.9984D	59D1	59.9984	24.3134	84.3118	49.4911	133.8029	26.1701	359	36	36	65	11	32	180	179	11
			59D2	59.9984	24.0666	84.0650	60.8809	144.9459	22.4994									
	06	76.8794A	76A	76.8794	25.4177	102.2971	67.5609	169.8580	29.5268	92	9	9	17	3	8	46	46	4
	07	76.8667B	76B1	76.8667	26.4797	103.3464	63.4055	166.7519	32.0783	228	23	23	41	7	21	115	113	7
			76B2	76.8667	22.5154	99.3821	77.9973	177.3794	26.5990									
	08	76.9549C	76C1	76.9549	26.9843	103.9392	63.4783	167.4175	32.2624	115	11	11	21	3	10	56	59	5
			76C2	76.9549	26.0123	102.9672	78.0868	181.0540	27.5585									
	09	84.8725A	84A	84.8725	24.9873	109.8598	74.5851	184.4449	31.7097	58	6	6	10	2	5	29	29	–
	10	84.5749B	84B	84.5749	23.3805	107.9554	69.7638	177.7192	33.5090	183	18	18	33	6	16	91	92	8
	11	84.9724D	84D	84.9724	24.5206	109.4930	70.0917	179.5847	33.9862	75	7	7	13	2	6	35	40	4
	12	90.6325A	90A1	90.6325	27.7371	118.3696	74.7606	193.1302	36.7415	17	–	2	–	1	–	3	14	5
			90A2	90.6325	26.2317	116.8642	79.6470	196.5112	33.7314									
	13	90.7300B	90B	90.7300	25.6606	116.3906	74.8409	191.2315	36.1272	7	–	1	–	–	–	1	6	5
	14	103.4617A	103A1	103.4617	29.2704	132.7321	85.3432	218.0753	41.1996	120	–	12	–	3	–	15	105	6
			103A2	103.4617	30.7825	134.2442	90.9212	225.1654	38.7479									
	15	103.8736B	103B	103.8736	31.8431	135.7167	85.6829	221.3996	42.1260	6	–	–	–	–	–	–	6	2
	합 계									2,116	196	211	353	63	176	999	1,117	102

※ 조합원 세대수와 보류지 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 면적합산 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단수조정에 따른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동주택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각 블럭별로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해당블럭에 따라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전,후시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적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실, 복도, 공동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총 4개블록으로 구성되며, 주택형별 위치, 블록구분, 블록별 주변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주택형	050.3901	059.8425A	059.5096B	059.9777C	059.9984D	076.8794A	076.8667B	076.9549C	084.8725A	084.5749B	084.9724D	090.6325A	090.7300B	103.4617A	103.8736B
견본주택 등의 약식 표기	50	59A	59B	59C	59D	76A	76B	76C	84A	84B	84D	90A	90B	103A	103B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50	59A	59B	59C	59D	76A	76B	76C	84A	84B	84D	90A	90B	103A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3	9	3	7	2	5	2	1	4	1	–	–	–	38
	장기복무 제대군인		1	3	9	2	6	2	4	2	1	3	1	–	–	–	3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3	9	2	6	2	4	2	1	3	1	–	–	–	34
	장애인	경기도	2	3	6	2	5	1	3	1	1	2	1	–	–	–	27
		서울시	1	1	3	1	2	–	1	1	1	1	1	–	–	–	13
		인천시	–	1	2	1	1	–	1	1	–	1	–	–	–	–	8
	중소기업 근로자		1	3	10	3	9	2	5	2	1	4	2	–	–	–	42
	계		7	17	48	14	36	9	23	11	6	18	7	–	–	–	196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김포시 및 경기도 (50%)		4	9	24	7	18	5	12	6	3	9	4	1	1	6	109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50%)		3	8	24	7	18	4	11	5	3	9	3	1	–	6	102
신혼부부 특별공급			11	31	86	25	65	17	41	21	10	33	13	–	–	–	35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5	14	4	11	3	7	3	2	6	2	1	–	3	63
생애최초 특별공급			6	16	43	13	32	8	21	10	5	16	6	–	–	–	176
합 계			33	86	239	70	180	46	115	56	29	91	35	3	1	15	99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타입	공급 세대 수	해당 동 · 라인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공급금액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시
											2025.02.25.	2025.08.25.	2026.02.25.	2026.08.25.	2027.02.25.	2027.08.25.	
50	50	65	506동 1,2호	2층	2	107,909,800	246,590,200	–	354,50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35,450,000	106,350,000
				3층	2	110,314,560	252,085,440	–	362,400,000	36,240,000	36,240,000	36,240,000	36,240,000	36,240,000	36,240,000	36,240,000	108,720,000
				4층	2	112,688,880	257,511,120	–	370,200,000	37,020,000	37,020,000	37,020,000	37,020,000	37,020,000	37,020,000	37,020,000	111,060,000
				5층	2	115,611,120	264,188,880	–	379,80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113,940,000
				6~10층	10	116,433,000	266,067,000	–	382,50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38,250,000	114,750,000
				11~20층	20	117,376,640	268,223,360	–	385,60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38,560,000	115,680,000
				21~30층	20	118,563,800	270,936,200	–	389,50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38,950,000	116,850,000
				31층 이상	7	119,629,200	273,370,800	–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59A	59A1	94	108동/110동/111동/113동/114동/118동 3호 115동 1호 116동 2호	2층	8	148,242,800	338,757,200	–	487,0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48,700,000	146,100,000
				3층	8	151,469,440	346,130,560	–	497,600,000	49,760,000	49,760,000	49,760,000	49,760,000	49,760,000	49,760,000	49,760,000	149,280,000
				4층	8	154,696,080	353,503,920	–	508,20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50,820,000	152,460,000
				5층	8	158,714,160	362,685,840	–	521,40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52,140,000	156,420,000
				6~10층	38	159,840,440	365,259,560	–	525,10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52,510,000	157,530,000
				11~20층	24	161,118,920	368,181,080	–	529,30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158,790,000
	59A2	52	401동 1, 3, 4, 5호	2층	4	122,399,240	279,700,760	–	402,100,000	40,210,000	40,210,000	40,210,000	40,210,000	40,210,000	40,210,000	40,210,000	120,630,000
				3층	4	125,077,960	285,822,040	–	410,90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41,090,000	123,270,000
				4층	4	127,726,240	291,873,760	–	419,60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41,960,000	125,880,000
				5층	4	131,074,640	299,525,360	–	430,60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43,060,000	129,180,000
				6~10층	20	131,987,840	301,612,160	–	433,60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43,360,000	130,080,000
				11~20층	16	133,053,240	304,046,760	–	437,10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43,710,000	131,130,000
	59A3	26	501동 3호	3층	1	143,889,880	328,810,120	–	472,70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47,270,000	141,810,000
				4층	1	146,933,880	335,766,120	–	482,70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48,270,000	144,810,000
				5층	1	150,769,320	344,530,680	–	495,30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49,530,000	148,590,000
				6~10층	5	151,834,720	346,965,280	–	498,800,000	49,880,000	49,880,000	49,880,000	49,880,000	49,880,000	49,880,000	49,880,000	149,640,000
				11~20층	10	153,082,760	349,817,240	–	502,90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50,290,000	150,870,000
				21~30층	8	154,604,760	353,295,240	–	507,900,000	50,790,000	50,790,000	50,790,000	50,790,000	50,790,000	50,790,000	50,790,000	152,370,000
59B	59B1	392	108동/110동/111동/113동 1, 2, 4호 114동/118동 1 ,2호 115동 2, 3호 116동 1 ,3, 4호	2층	21	145,929,360	333,470,640	–	479,40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47,940,000	143,820,000
				3층	21	149,125,560	340,774,440	–	489,90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48,990,000	146,970,000
				4층	21	152,291,320	348,008,680	–	500,30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50,030,000	150,090,000
				5층	21	156,248,520	357,051,480	–	513,30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51,330,000	153,990,000
				6~10층	102	157,374,800	359,625,200	–	517,0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51,700,000	155,100,000
				11~20층	147	158,622,840	362,477,160	–	521,10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52,110,000	156,330,000
				21~30층	59	160,205,720	366,094,280	–	526,30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52,630,000	157,890,000
	59B2	13	401동 2호	2층	1	120,511,960	275,388,040	–	395,90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118,770,000
				3층	1	123,129,800	281,370,200	–	404,50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40,450,000	121,350,000
				4층	1	125,747,640	287,352,360	–	413,100,000	41,310,000	41,310,000	41,310,000	41,310,000	41,310,000	41,310,000	41,310,000	123,930,000
				5층	1	129,035,160	294,864,840	–	423,900,000	42,390,000	42,390,000	42,390,000	42,390,000	42,390,000	42,390,000	42,390,000	127,170,000
				6~10층	5	129,948,360	296,951,640	–	426,900,000	42,690,000	42,690,000	42,690,000	42,690,000	42,690,000	42,690,000	42,690,000	128,070,000
				11~20층	4	130,983,320	299,316,680	–	430,30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43,030,000	129,090,000
				3층	3	141,667,760	323,732,240	–	465,40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139,620,000
				4층	3	144,681,320	330,618,680	–	475,300,000	47,530,000	47,530,000	47,530,000	47,530,000	47,530,000	47,530,000	47,530,000	142,590,000